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주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81

발의연월일: 2021. 6. 8.

발 의 자:전주혜·허은아·성일종

김예지 • 이채익 • 강대식

김기현 · 조명희 · 태영호

정운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취득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지만이러한 취득세감면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.

하지만 다른 차량에 비해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큰 경형자동차의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특례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, 현행법 상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취득세 감면액 또한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경자동차의 취득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량 가액이 불과 1,250만원에 해당하는 차량까지만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을 아예 폐지하여 경형자동차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.

이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의

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한 없이 이를 시행하고,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페지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(안 제67조제1항). 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"을 "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감면"을 "면제"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7조(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	제67조(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
세특례) ① 「자동차관리법」	세특례) ①
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	
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	
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	
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	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
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	
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	
한다. 다만, 취득일부터 1년 이	
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	
우에는 <u>감면</u> 된 취득세를 추징	<u>면제</u>
한다.	
1.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	<u><삭 제></u>
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.	
2.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	<u><삭 제></u>
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	
원을 공제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